

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

1. 선임자

- 성 명:
- 직 책:
- 자 격:
- 선임일:

2. 수행업무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9조의5 각 호에 따른 업무

귀하를 00000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합니다.

2018. . .

대표이사 (직인)

본인 확인: 본인은 00000의 안전·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·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18. . .

성명 (서명)

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5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)
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·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2.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3.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4.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6. 산업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